

#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5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308,551,048	99,256,531
일반회계	2,905,099,895	87,152,997
특별회계	403,451,153	12,103,535
공기업특별회계	321,562,040	9,646,86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7,599,067	4,727,97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3,962,973	4,918,889
기타특별회계	81,889,113	2,456,673
교통사업 특별회계	31,151,673	934,55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221,395	66,642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355,964	100,679
대지보상 특별회계	1,576,982	47,309
기반시설 특별회계	105	3
수질개선 특별회계	13,210,316	396,309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8,746,587	262,398
균형발전특별회계	21,626,091	648,78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4,040,933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3,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